

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제안자	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		
	법인등록번호	전화번호	
	주소		
산업혁신 구역 개요	구역의 명칭		
	지정 목적		
	위치		
	면적	m ²	사업기간

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제5항,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0항,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	1.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.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.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(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4.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(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,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합니다) 5. 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제 안 자

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
(산업혁신구역사업 담당 부서)

제안서 작성

접 수

검 토

수용 여부 결과 통보
(30일 이내)

결 재